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29

발의연월일: 2021. 7. 26.

발 의 자 : 양정숙 · 서영교 · 김홍걸

이상헌 • 이용빈 • 위성곤

이규민 • 조오섭 • 김한정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뿐 아니라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로봇, 자율주행차,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부품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 세금면제 하는 등 반 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 원 규모 의 투자를 추진하겠다 하였으며, 유럽연합도 67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임.

반면, 2020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 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육성 정책은 다 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편에 속해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 쟁력의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반도체 연구·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반도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과세특례) 제10조제1항제1호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하여는 같은 호의 기업유형에 따른 공제비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중소기업은 100분의 12)"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 사업을 위한 시설(이하 이조에서 "반도체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의"를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반도체시설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

용례) 제10조의3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3(반도체 연구・인력개
	발비의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과세특례) 제10조제1항제1호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ㆍ
	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 연구·인력개발
	비에 관하여는 같은 호의 기업
	유형에 따른 공제비율에 차등
	<u>을 두지 아니하고 100분의 50</u>
	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u>한다.</u>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

1. (현행과 같음)
2
가
- <u>100분의 12), 대통령령으</u>
로 정하는 반도체 사업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반도체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u>50</u>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 산방법, <u>신성장사업화시설의</u> 판 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반
도체시설의	